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01
----------	-------

발의연월일 : 2022. 11. 10.
발의자 : 이주환 · 안병길 · 권명호
박대수 · 김승수 · 이채익
이현승 · 전봉민 · 김용판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적인 환경 의제인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수많은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지하수는 그 자체가 가지는 온도의 항상성을 기반으로 물의 열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복잡한 기술과 공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유출지하수는 지하철 역사,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로써,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매일 38만톤이 발생하며 이는 연간 1.4억톤에 이르는 방대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의미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하수도로 버려지거나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는 냉난방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도로 살수에 활용하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기에 유출지하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하수열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유출지하수활용업을 신설하여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8호 신설 등).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하수열”이란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를 말한다.

8. “유출지하수활용업”이란 유출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유지관리 또는 유출지하수 활용 컨설팅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이용”을 “이용하고 지하수열 등 지하수의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하수열의 이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

제9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의2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

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 수립·신고를 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측정 설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과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자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유출지하수활용업의 등록) ① 유출지하수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

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9조의2에 따라 유출지하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유지관리, 유출지하수 활용 컨설팅 등의 업무를 제1항에 따른 유출지하수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유출지하수활용업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유출지하수활용업”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유출지하수활용업자”로 본다.

제3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9조의3에 따른 유출지하수활용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34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유출지하수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제35조제2호 중 “제29조의2제3항”을 “제29조의2제3항, 제29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5호 중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을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제29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의3제1항”으로,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지하수영향조사업무, 지하수정화업 또는 유출지하수활용업”으로 한다.

제37조의3제8호 중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을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제29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의3제1항”으로,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지하수영향조사업

무, 지하수정화업 또는 유출지하수활용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29조의2제3항”을 “제29조의2제3항, 제29조의3제3항”으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자 또는 유출지하수활용업자”로 한다.

제40조제11호 중 “제29조의2제3항”을 “제29조의2제3항, 제29조의3제3항”으로,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지하수정화업 또는 유출지하수활용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 ·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p> <p>② ~ ④ (생 략)</p> <p>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 관리를 위하여 다음</p>	<p>제2조(정의)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지하수열”이란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를 말한다.</u></p> <p><u>8. “유출지하수활용업”이란 유출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유지관리 또는 유출지하수 활용 컨설팅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u></p>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p> <p>-----</p> <p>----- <u>이용하고</u></p> <p><u>지하수열 등 지하수의 새로운</u></p> <p><u>부가가치를 창출-----.</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p> <p>-----</p> <p>-----</p>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4. ~ 6. (생략)	3의2. 지하수열의 이용 활성화
(2) ~ (8) (생략)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4. ~ 6. (현행과 같음)
(1)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3) ~ (6) (생략)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
	-----.
	<u>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3) ~ (6) (현행과 같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 수립·신고를 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측정 설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조사 등) ① (생 략)

제21조(출입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과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자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간을 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
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④ 제3항

⑤ 제3항

<신 설>

제3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 검

제29조의3(유출지하수활용업의 등록) ① 유출지하수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9조의2에 따라 유출지하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유지관리, 유출지하수 활용 컨설팅 등의 업무를 제1항에 따른 유출지하수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유출지하수활용업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은 “유출지하수활용업”으로,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자”는 “유출지하수활용업자”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

<p>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제25조제1항(<u>제29조의2제3항</u> 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p> <p>3. (생 략)</p> <p>제37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4. (생 략)</p> <p>5. <u>제22조제1항 · 제27조제1항</u> <u>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u> <u>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u> <u>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u> <u>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지하</u> <u>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u> <u>정화업을 한 자</u></p> <p>6. (생 략)</p> <p>제37조의3(별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p> <p>1. ~ 7. (생 략)</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제29조의2제3항,</u> <u>제29조의3제3항</u>-----</p> <p>-----</p> <p>-----</p> <p>3. (현행과 같음)</p> <p>제37조(별칙) -----</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제22조제1항 · 제27조제1항 ·</u> <u>제29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u> <u>의3제1항</u>-----</p> <p>-----</p> <p>-----</p> <p>----- <u>지하수</u> <u>영향조사업무, 지하수정화업</u> <u>또는 유출지하수활용업</u>-----</p> <p>-----</p> <p>6. (현행과 같음)</p> <p>제37조의3(별칙) -----</p> <p>-----</p> <p>-----</p> <p>-----</p> <p>1. ~ 7. (현행과 같음)</p>
--	---

<p>8. <u>제22조 제1항 · 제27조 제1항</u> 또는 <u>제29조의2 제1항</u>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u>지하수개발 · 이용시공</u> <u>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u> <u>지하수정화업을 한 자</u></p> <p>9. 제26조(<u>제29조의2 제3항</u>에 따 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u>지</u> <u>하수개발 · 이용시공업자, 지</u> <u>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u> <u>수정화업자와 명의 대여 또는</u> <u>등록증 대여의 상대방</u>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 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p> <p>1. ~ 10. (생략)</p> <p>11.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u>제</u> <u>29조의2 제3항</u>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u>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u> <u>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u> <u>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u></p>	<p>8. <u>제22조 제1항 · 제27조 제1항</u> 제29조의2 제1항 또는 제29조 의3 제1항----- ----- ----- -- <u>지하수영향조사업무, 지하</u> <u>수정화업 또는 유출지하수활</u> <u>용업</u>-----</p> <p>9. -----<u>제29조의2 제3항, 제29</u> <u>조의3 제3항</u>----- ----- ----- <u>지하</u> <u>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u> <u>업자 또는 유출지하수활용업</u> <u>자</u>----- 제40조(과태료)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제2</u> <u>9조의2 제3항, 제29조의3 제3항</u> ----- -- <u>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u> <u>지하수정화업 또는 유출지하</u> <u>수활용업</u>-----</p>
---	---

로 신고한 자

12. ~ 14. (생략)

12. ~ 14. (현행과 같음)